



한국여성민우회

Korean Womenlink

미디어운동본부

110-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-9 동평빌딩 4층 TEL:734~1046/ FAX:736~5766

<http://www.womenlink.or.kr> • minmedi@chollian.net

문서번호 : 미디어-2008-021

2008. 8. 28.(목)

수신 :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참조 : 네트워크정책관

제목 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온라인 의견 제출의 건

1.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미디어 감시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.
3. 귀 위원회가 입법 예고하신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해 별첨과 같은 의견을 보내드립니다.
4. 감사합니다.

- ◆ 담당 : 윤정주 사무국장 (02-734-1046)
- ◆ 별첨 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서

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

소장 강 혜 란



<별첨>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서

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

I. 기본 입장

- 이번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'은 관련 부처와의 역할 조정,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,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,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,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.
- 이중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.
- 그러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은 '수신자 동의 전제' 등 매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,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은 여전히 미온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.
- 보다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대체 가입 수단을 활성화하고 최소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. 그런데 이와 관련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봄.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해킹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이는 유일한 대안이자 가장 근본적인 대안임. 이에 개인정보 집적 최소화를 위한 관리 감독 기능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함.

- 또 임시조치 강화 방안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접속 요청권 도입,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등은 공권력의 일방적인 개입 가능성을 열어주고 포털사이트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임.
- 특히 임시조치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위법 유무를 사업자나 제3의 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위헌적 요소로 인해 여러 차례가 사회 문제가 되어 온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강화 시킨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.
- 가장 바람직한 안은 피해자와 계재자 간의 합리적 소통을 바탕으로 직접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.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업자나 심의기관이 중재하는 수준을 넘어 법률적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은 검열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. 이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.

II. 세부 의견

1. 임시조치 관련 제도 개선(119조, 145조)

◀ 반대

◀ 근거 :

- 계재자의 이의신청 확인이 강제된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지만, 근본적으로 위법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의 표현이 제약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.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조건 7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규정일 뿐 아니라 부적절한 내용임. 사안별로 경중이 다를 뿐 아니라 숙의라는 심의 본연의 정신을 고려할 때, 이를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과 같이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함.

- 더구나 3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은 다른 조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임.

2.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 도입(제53조)

◀ 수정 보완

◀ 근거 :

- 사업자의 요청이 전제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접속요청권한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함. 물론 법률에 사업자의 수용 의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, 대부분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 중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. 이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, 지원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개정 법률안 53조 2항 수정제시 : '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취약점 점검, 기술 지원 등의 조치를 위해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즉각적인 지원 조치를 취한다'

3.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(제85조)

◀ 수정 보완

◀ 근거 :

- 경찰의 위치정보 요청은 공권력 남용 등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, 반드시 '납치' '유괴' '실종' 사안만으로 제한되어야 함.
- 때문에 위반시 징계 내용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하며, 매년 총 건수와 각 사건의 종결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야 함.

4. 개인정보 집적 최소화를 위한 관리 감독 기능 신설

◀ 신설

◀ 근거 :

- 개인 정보 보호의 가장 근본적 대안은 집적의 최소화임.
- 이에 수집·이용·폐기 등과 관련한 일련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, 관련 법칙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. 특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미비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전제로 서비스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.
- 이에 적극적 개선을 위한 관리·감독기능을 신설하고, 매년 주요 모니터링 결과를 공표하고 징계 및 개선 내용을 공표하는 적극적인 계도 노력이 필요함. 이에 관련 내용의 신설을 요청함.